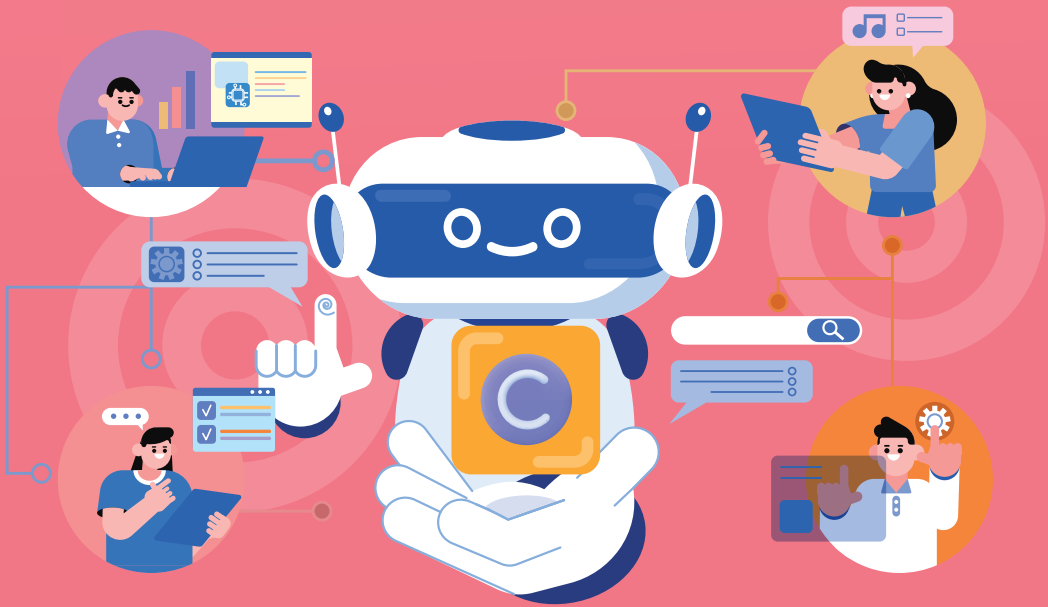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025. 6.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025. 6.



- 생성형 인공지능은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결과물이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기준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에 이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를 갖는 각 주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안내서를 마련하였습니다.
 - * 본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를 다루기에 앞서,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는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분류와 저작권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TRIPS 협정, WIPO 저작권 조약(WCT) 등 주요 국제조약의 회원국으로서, 국제 규범을 기반으로 국내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국제 조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된 규정들은 국내에서 국내외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본 안내서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년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에서의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 본 안내서는 2025년 6월 기준 현행 저작권법과 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법률 제·개정이나 새로운 판결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일러두기

1 저작권법 일반

- | | |
|------------------|----|
| 1. 저작권 | 8 |
| 2. 저작인접권 | 11 |
| 3.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12 |
|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13 |
| 5. 저작재산권의 제한 | 14 |
| 6. 침해 구제 | 15 |

2 저작권 등 권리 침해 개관

- | | |
|------------------|----|
| 1.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 20 |
| 2. 재산권 침해 | 20 |
| 3. 인격권 침해 | 21 |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의의와 결과물의 유형

- | | |
|--------------------|----|
| 1. 생성형 인공지능 | 24 |
| 2.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 24 |
|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 24 |

4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 | | |
|------------------------|----|
|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 28 |
| 2. 생성형 인공지능의 단계별 침해 태양 | 28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5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고려요소

- 1. 의거성 판단 32
-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33
- 3. 침해 주체 판단 34

6 권리자에 대한 안내 사항

-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38
- 2.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40

7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

-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유의 사항 44
- 2. 프롬프트 입력 시 유의 사항 44
- 3.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활용 및 배포 시 주의 사항 45
-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약관 확인의 중요성 45
- 5.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48

8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 사항

- 1.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형 52
- 2.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유의 사항 52
- 3.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53
- 4.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약관 명시 55

부록 1 Q&A 58

부록 2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 운영 경과 62



저작권법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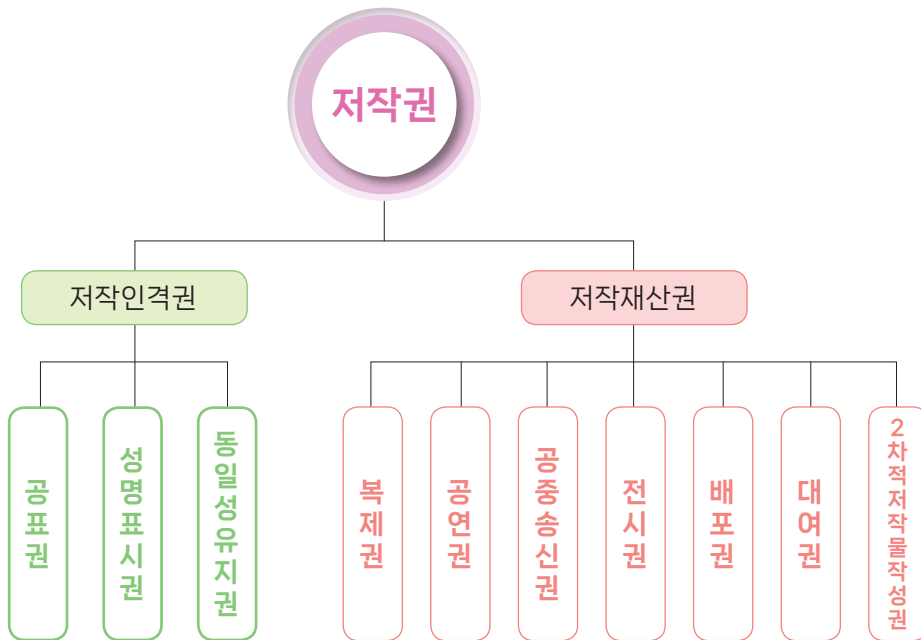


1. 저작권
2. 저작인접권
3.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 저작재산권의 제한
6. 침해 구제

1. 저작권

가. 광의의 저작권

-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 저작권은 '저작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로 보여지나, 실제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 '권리의 다발'로,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3종류로 구성됨
 -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로, 7종류로 구성됨



[그림1] 저작권의 종류

나. 저작인격권

-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¹⁾
 - A가 직접 그린 후, 아직 공개하지 않은 그림을 B가 몰래 촬영하여 B 블로그에 게시하였다면, B는 A의 공표권을 침해한 것임

1) 저작권법 제2조제25호, 제11조

-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²⁾
 - A가 만든 조각상을 전시하면서, 작가를 B로 표기했다면 A의 성명표시권 침해가 됨
- **(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의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³⁾
 - A가 그린 그림을 구입한 B가 A 동의 없이 그 배경색을 변경하여 전시하면, B는 A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임

다. 저작재산권(협의의 저작권)

-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권리이며, 건축물의 경우 건축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권리가 포함됨⁴⁾
 - 다른 사람이 만든 영화·음악 등을 권리자 허락 없이 복제할 경우 복제권 침해가 됨
-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이나 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개하는 권리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도 공연에 포함됨⁵⁾
 -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이나 시를 권리자 허락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재생하거나 낭독하는 경우 공연권 침해가 됨
-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⁶⁾로, 방송권·전송권·디지털음성송신권 등으로 구분됨
 - **방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⁷⁾
 -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을 권리자 허락 없이 방송하는 경우 복제권 및 방송권 침해가 됨
 - **전송권**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할 권리이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함⁸⁾

2) 저작권법 제12조

3) 저작권법 제13조

4) 저작권법 제2조제22호, 제16조

5) 저작권법 제2조제3호, 제17조

6) 저작권법 제2조제7호, 제18조

7) 저작권법 제2조제8호

8) 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 등을 권리자 허락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떠오는) 경우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되나, 사진을 촬영한 저작권자가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퍼가도 좋다는 내용을 함께 게시한 경우 저작권법상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침해라고 보기 어려움
- **디지털음성송신권**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을 송신할 권리(전송 제외)⁹⁾
 -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을 권리자 허락 없이 실시간 웹캐스팅 음악방송에 이용할 경우 디지털음성송신권 침해가 됨
- **(전시권)** 미술·사진 및 건축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할 권리¹⁰⁾
 -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권리자 허락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전시할 경우 전시권 침해가 됨
- **(배포권)** 저작물의 원작품 혹은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게 양도 혹은 대여할 권리¹¹⁾
 - 다른 사람이 만든 음반이나 책을 무단 복제하여 배포할 경우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가 됨
- **(대여권)**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함)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¹²⁾
 - 대여권은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므로, 도서나 영화 등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여권이 미치지 않음
 - 음악 CD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대여하는 경우 대여권 침해가 됨
-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¹³⁾
 - 외국소설을 권리자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영화로 만들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됨

9) 저작권법 제2조제11호

10) 저작권법 제19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11) 저작권법 제2조제23호, 제20조

12) 저작권법 제21조

13) 저작권법 제5조, 제22조

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¹⁴⁾

	보호 시작	보호 끝
원칙	창작한 때	저작자 사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공표된 때로부터 70년
업무상저작물/영상저작물		공표한 때로부터 70년
공동저작물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 사망 후 70년

- 보호기간 끝나는 시점의 기산점 :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함

2. 저작인접권

-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유사의 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가. 저작인접권자의 종류

- **(실연자)**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또는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배우·가수·연주자·지휘자 등)
- **(음반제작자)** 음반¹⁵⁾을 최초로 제작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SM엔터테인먼트·YG 엔터테인먼트 등)
- **(방송사업자)** 방송¹⁶⁾을 업으로 하는 자(KBS·MBC·SBS 등)

14) 저작권법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15) 저작권법 제2조(정의)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권' 용어 정의 참조(3쪽)

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 **(실연자)**¹⁷⁾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생실연)공연권, (생실연)방송권, 전송권, 상업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 **(음반제작자)**¹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상업용 음반에 대한 방송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¹⁹⁾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

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²⁰⁾

	보호 시작	보호 끝
실연	실연을 한 때	실연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된 경우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음반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지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로부터 70년
방송	방송을 한 때	방송을 한 때의 다음 해부터 50년

3. 배타적발행권과 출판권

- **(배타적발행권)**²¹⁾ 저작권이라는 준물권에 기하여 저작물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준 권리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 받은 자는 저작자를 포함한 모든 제3자에 대하여 해당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이용권 주장 가능

17) 저작권법 제66조부터 제77조까지

18) 저작권법 제78조부터 제83조의2까지

19) 저작권법 제84조부터 제85조의2까지

20) 저작권법 제86조

21) 저작권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

- **(출판권)²²⁾** 종이책자 형태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에 적용되며,
 -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제3자의 이용행위나 침해행위가 있을 경우,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는 저작권자를 대위하지 않고도 직접 민사소송의 원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고소권을 행사하여 민·형사상 구제 가능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타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

가. 데이터베이스 정의²³⁾

- ① 편집물²⁴⁾이어야 함
- ②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것이어야 함
- ③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함

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제한

-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²⁵⁾를 말함
- **(부여되는 권리)**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²⁶⁾
- **(권리 제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양도·이용허락·권리 소멸·등록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동일하게 준용
- **(보호기간)**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5년간 보호

22) 저작권법 제63조·제63조의2

23) 저작권법 제2조제19호

24) 저작권법 제2조(정의) 17.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5) 저작권법 제2조제20호

26) 저작권법 제93조

5. 저작재산권의 제한

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나,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 목적에 반하므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말함
 - 이용행위가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함

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규정	내용
제23조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제24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	교과용 도서 게재, 학교 교육 목적 등예의 이용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	도서관 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
제33조의2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화 변환 등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	부수적 복제 등

규 정	내 용
제35조의4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6. 침해 구제

가. 원칙

- 저작권을 침해당한 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 구제 및 형사 제재 신청할 수 있음

나. 민사 구제²⁷⁾

-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예방, 침해정지,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치
-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청구는 실손해배상²⁸⁾ 또는 법정손해배상²⁹⁾ 청구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됨

다. 형사 제재³⁰⁾

-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음

27) 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6조까지, 민법 제766조 등

28)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손해액만큼 배상 청구

29) 손해액에 같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 청구

30)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142조까지, 형사소송법 제230조 등

- 형사 고소란 저작권자가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피의자를 수사를 거쳐 기소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저작권 침해죄 등은 침해자를 안 이후 6개월 이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임
 - 따라서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함)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제3자의 고발만으로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움
 -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³¹⁾를 적용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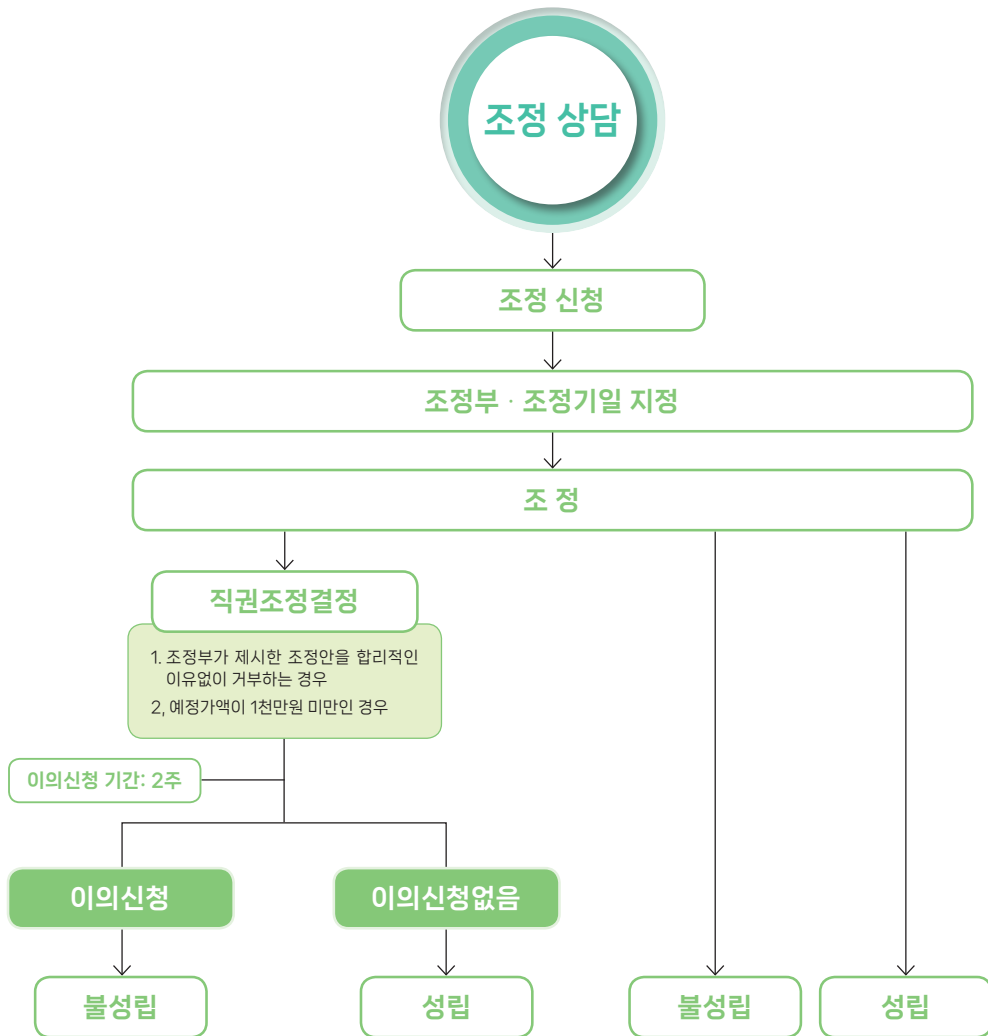
라. 분쟁 조정

- 조정제도란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조정위원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를 말함
- 조정제도는 신속성, 전문성, 경제성 그리고 비공개성을 특징으로 함

신속성	소송에 비해 신청 및 진행 절차가 신속 간편하므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처리(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문성	각 조정부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조력 지원 가능(조정부 3인으로 구성, 1인은 변호사 자격 필요)
경제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분쟁조정은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 가능
비공개성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영업상 또는 개인적 비밀이 보장

- **(조정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내방 또는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등 조정 관련 문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감정팀(☎ 02-2669-0044)

31)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림2] 조정 절차



저작권 등 권리 침해 개관



-
1.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2. 재산권 침해
 3. 인격권 침해

2

저작권 등 권리 침해 개관

1.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³²⁾

-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이란 아이디어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고 표현만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것으로, 저작물의 보호범위를 개념적으로 한정하는 원칙을 말함
 - 어떤 작품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구성 부분 모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부분 중 단순한 사상, 관념, 발명 등 아이디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되지 않고, 아이디어의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호됨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생략]

【서울민사지법 1990. 4. 19. 선고 89가합39285 판결】

회화에 있어서의 화풍이나 소설류에 있어서의 테마기법 등의 아이디어 자체는 독점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그 기법이나 아이디어에 의해 작성된 표현물 자체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재산권 침해

- 재산권 침해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발행물, 데이터베이스를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이하 “권리자”라 함)의 이용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과 이용 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것을 말함
-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권리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 제62조제2항, 제63조의2, 제87조, 제94조, 제101조의3부터 101조의5까지

** 저작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후 70년

32) [부록1] Q&A Q1) 참조

3. 인격권 침해

- 인격권 침해란 저작자나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인격권 침해로 간주함
 - 인격권 침해 행위는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공표권), 저작자나 실연자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표기하는 행위(성명표시권), 저작물이나 실연의 제목·내용·형식을 왜곡, 절단, 변경하는 행위(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함



생성형 인공지능의 의의와 결과물의 유형



1. 생성형 인공지능
2.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3

생성형 인공지능의 의의와 결과물의 유형

1. 생성형 인공지능

-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GAI”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특정한 요구 (프롬프트, prompt)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을 말함

* 프롬프트의 형식은 글(텍스트)에 한정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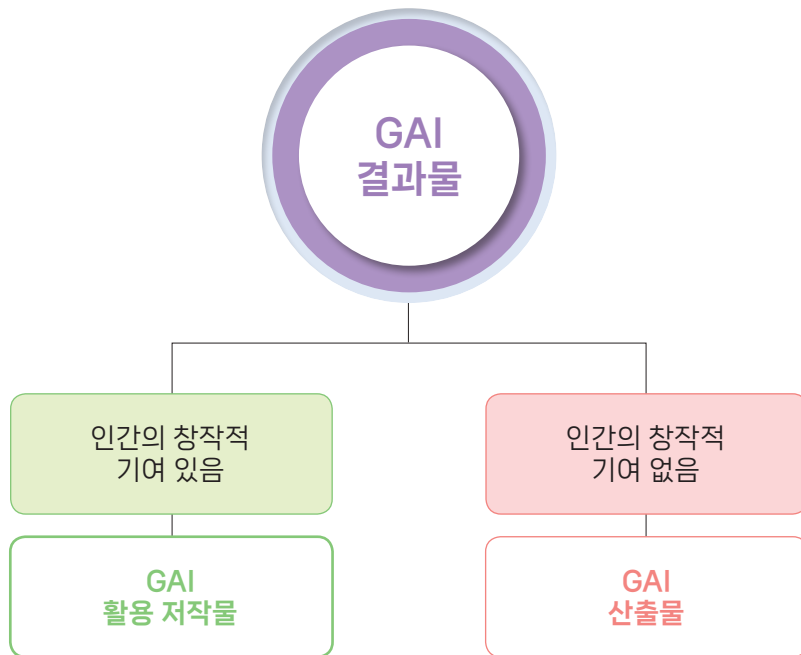
2.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

- GAI 산출물이란 인간의 지시에 따른 결과물 중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결과물을 말함

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 GAI 활용 저작물이란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음

- ① 이용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프롬프트로 입력하여 생성된 GAI 결과물에 그 저작물의 창작성이 나타난 경우
- ② 이용자가 GAI 산출물을 수정·증감 등 ‘추가 작업’한 부분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 ③ GAI 산출물을 선택하고 배열 또는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



[그림3] GAI 결과물의 유형

4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2. 생성형 인공지능의 단계별 침해 태양

4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1.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 GAI의 목적이 GAI 결과물을 생성하는 것에 있다는 점, GAI 결과물을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나 GAI 모델 또는 서비스 개발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GAI 결과물은 이용자의 프롬프트에 의해 지시·유도된다는 점이 기술적인 특성임
- GAI는 주어진 원본 데이터를 학습하여 원본 데이터와 구별하기 어렵거나(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는(Diffusion, VAE(Variational Autoencoder))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며, 원본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GAI는 학습데이터의 분포를 모방하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GAI 결과물이 학습에 사용된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유사성은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의 영향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우연의 일치나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등에 의해 학습하지 않은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GAI 결과물이 생성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2. 생성형 인공지능의 단계별 침해 태양

- GAI는 학습 단계-서비스 단계로 구분 가능하며, 각 단계별로 법적 문제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
 - ※ GAI 학습 단계에서는 학습데이터인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는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안내서는 GAI 결과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포함하지 않음
- GAI 서비스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기존 저작물과의 관계에서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GAI 산출물과 GAI 활용 저작물 모두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판단기준은 동일함
 - 단순히 기존 저작물과 GAI 결과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성립될 수 있음
 - GAI 산출물을 활용하여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 경우, GAI 산출물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고려 요소**

1. 의거성 판단

- 의거성이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만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기준을 말함
 - 저작권 침해 요건으로써 의거는 타인의 저작물을 보거나 접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인정됨
- 따라서 어떤 GAI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GAI 이용자가 GAI 결과물을 생성할 때 해당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에 의거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 외에도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판례는 의거성에 관하여 피침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양 저작물의 유사성 등의 간접 사실*이 인정되면 의거성은 추정(推定)³³⁾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판결)

* 간접 사실에는 양 저작물 사이에 의거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현저한 유사성(striking similarity)도 포함됨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직접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된다고 할 수 있지만,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 보다 먼저 창작되었거나 후에 창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창작되었다고 볼 만한 간접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3) 추정이란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고, 다른 사실을 증명한 후 이를 통해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이 있는지를 추론해 내는 것을 말함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

- GAI 모델 또는 서비스의 개발은 저작물(예: 책, 그림, 음악, 영상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이루어지며,
 - GAI 이용자는 해당 인공지능 모델 또는 서비스의 학습에서 특정 저작물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음

- LLM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탐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DE-COP(Detecting Copyrighted Content)³⁴⁾이 제안된 바 있음
 - LLM은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텍스트의 원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활용한 것으로,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구분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 따라서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준으로써 의거성은 기존의 의거성 판단 기준을 토대로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했는지와 함께 특정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었는지를 주요한 요소로 하여 검토될 수 있음
 - ‘특정 저작물 인식 여부’는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 자체를 입력하거나 저작물의 제호 등 특정 고유명사를 입력하는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음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 실질적 유사성이란 G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함
 - 실질적 유사성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의미하며,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판단 대상이 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확정되어야 함

34) André V. Duarte et al., “DE-COP: Detecting Copyrighted Content in Language Models Training Data”, arXiv:2402.09910 [cs.CL], 2024. 2. 15.

- 저작물의 유형이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므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맥락에 따라 이루어짐

3. 침해 주체 판단

-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책임은 일반적으로 해당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에게 있으며, GAI 사업자도 일정한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여지도 있음
 - GAI 사업자가 미세 조정(파인튜닝, Fine-tuning) 과정에서 특정 저작자의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추가 학습을 하여 GAI 모델을 만든 경우나 특정 분야 AI 개발을 목적으로 특정 저작자의 저작물을 학습하여 모델을 만든 경우 GAI 사업자도 별도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음
- 또한, 이용자의 침해 책임이 경미하거나 인정될 여지가 적은 상황에서 사업자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중대해질 수 있는 사례도 있음
 - 예컨대, 개인 이용자가 단순한 정보 탐색을 위해 GAI를 활용한 결과, 언론사 기사 등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생성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시킨 GAI 사업자의 기여 정도와 개입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침해자로서 사업자의 책임이 더 중하게 인정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이용자 책임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모델 구축 및 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의 기여도와 개입 수준 역시 함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은 경우】

- ①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었던 경우

예시 “○○○ 작가의 ○○○ 시의 원문을 모두 보여줘”라고 입력

➔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특정 작가의 작품 또는 이미지 등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GAI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그 결과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생성된 경우 GAI 사업자에게도 저작권 침해 책임 가능성 있음

- ②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당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우

예시 “작은 키, 동그란 얼굴, 큰 머리와 짧은 팔다리를 가진 귀여운 꼬마 핑귄을 그려줘. 파란색 몸에 노란색 부리, 둥글고 커다란 눈, 그리고 빨간색 헬멧과 고글을 착용하고 있어”라고 입력

➔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경우

- 특히, GAI 이용자가 단순히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과 공통된 GAI 결과물을 생성하도록 구체적인 프롬프트를 수차례 반복하여 입력한 경우라면 의거성이 추정 될 수도 있어 저작권 침해 위험이 높을 수 있음

【저작권 침해 위험이 낮은 경우】

③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고, 해당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우

예시 “귀여운 고양이 그림을 그려줘”라고 입력

➔ GAI 결과물이 타인의 작품과 유사한 경우

- GAI 이용자의 인식이 없고,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유사할 수도 있으나,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경우라면 의거성이 없다고 보아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님

【저작권 침해에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경우】

④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지만, 해당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었던 경우

• 이용자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견해

일반적으로 GAI 이용자가 학습데이터에 어떤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GAI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의거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

• 학습데이터 포함 여부가 중요하다는 견해

GAI 이용자가 학습데이터에 어떠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만 이용자의 인식이 없더라도 특정 저작물이 학습데이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물이 해당 저작물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⑤ 검색증강생성(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하 “RAG”라 함) 시스템의 경우

RAG 시스템의 구체적 설계 방식, 답변 내용에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의 내용을 얼마나 노출시키도록 설계하였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 판단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의의 및 작동 원리)** RAG는 기존 학습데이터 외부의 신뢰할 수 있는 지식 베이스를 참조하여, 실시간으로 검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작동³⁵⁾
- **(저작권 쟁점)** 데이터의 수집, 사용, GAI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저작권 쟁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GAI에 관한 저작권 쟁점들과 유사하나, RAG 시스템이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검색된 정보에 기반한 답변을 생성하는 특성에서 다른 GAI와는 차이가 있으며,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이용 허락이 필요할 수 있음

35) 이철남 외,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작권정책연구 2024-02,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288쪽 각주 682 재인용



권리자에 대한 안내 사항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2.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 2025년 6월 기준, 타인의 저작물을 그 권리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AI 학습에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바 없음
 - 다만, 저작물이 자신의 허락 없이 AI 학습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참고할 수 있음
- 권리자의 권리 행사와 AI 산업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권리자의 명시적 거부, AI 학습의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 · 기술적 방안이 국내외에서 검토되고 있음
-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G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에 반대하는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AI 학습 거부 의사 표기 사례]

- 방송사 S사는 홈페이지, 포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AI 학습 이용 금지' 선언(23년 8월)
- A 언론사는 'AI 및 대량 크롤링 방지' 약관 신설(23년 9월)
- 외국 P 출판사는 종이책에 출판할 책과 재인쇄할 책의 표준 저작권 페이지에는 “이 책의 어떤 부분도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시스템을 훈련하는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라고 선언(24년 10월)
-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무단으로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웹사이트나 데이터 저장소에 robots.txt 파일을 설정하여 크롤러 접근을 제한하거나, API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음

크롤링(Crawling)

인터넷상의 데이터들을 자동화된 방법으로 탐색하여 수집 ·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크롤링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을 크롤러(Crawler)라고 함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이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 프로토콜 및 도구를 말하며, 개발자가 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 및 데이터 형식을 정의하며, 서로 다른 시스템과 기능의 통합을 가능하게 함

- 인터넷에 공개된 저작물이라면 권리자의 별도 이용 허락이 없이 GAI 학습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리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인터넷 공개 방식을 점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로봇 배제 표준은 웹 크롤러가 사이트 내 특정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를 말함
 - 로봇 배제 표준(robots exclusion standard), 로봇 배제 프로토콜(robots exclusion protocol)은 인터넷에 로봇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으로, 로봇이 robots.txt 파일을 읽고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robots.txt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확립된 해석이 있지는 않으나, GAI 학습 목적 무단 수집의 방지에 유의미한 수단이 되고 있음

[robots.txt 파일을 설정한 예시]

- ① 모든 크롤러의 전체 사이트 접근 허용

```
User-agent: *
Allow: /
```

- ② 모든 크롤러의 전체 사이트 접근 차단

```
User-agent: *
Disallow: /
```

- ③ 특정 크롤러만 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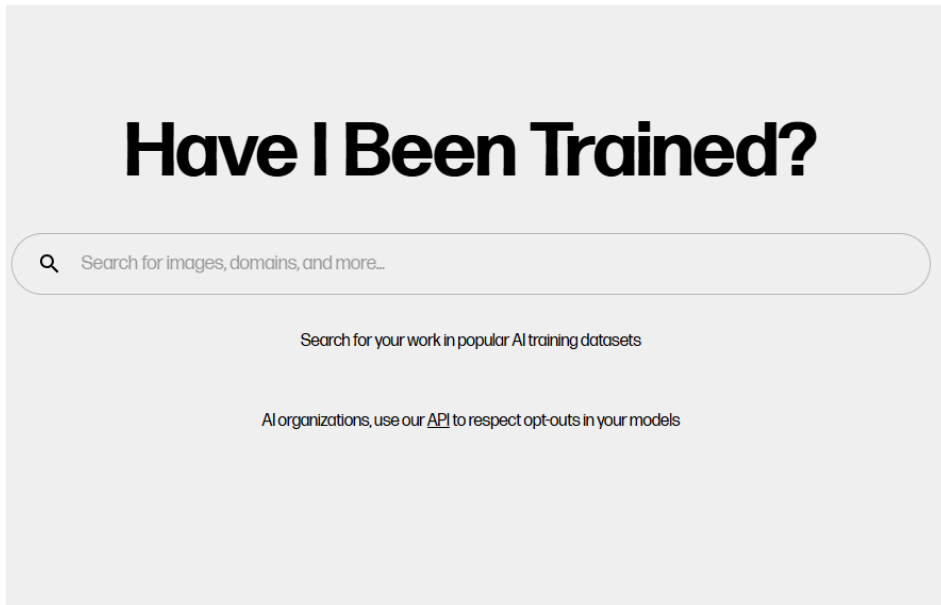
```
User-agent: ☆☆☆bot
Disallow:
```

-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저작물에 저작권자 정보, 이용 허락 범위, 출처 등의 메타데이터를 삽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와 결합한다면 무단 이용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권리관리정보(RMI) 삽입은 저작물의 저작권 정보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저작물에 삽입하여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저작물의 사용 및 권리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말함

권리관리정보 메타데이터의 예시

- 콘텐츠 소유자: 콘텐츠의 실제 권리자, 즉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스 소유자
- 저작권 지역: 콘텐츠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지역 또는 국가
- 콘텐츠 사용 조건: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제한 조건, 허용가능한 사용 방식, 사용료 등
- 콘텐츠 버전: 콘텐츠의 다양한 버전 또는 변형 정보
- 콘텐츠 유형: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문서 등 콘텐츠의 유형

- 최근에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GAI 학습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음
 - 예를 들어, haveibeen trained.com과 같은 사이트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는지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 ※ 다만, 이러한 사이트의 정확성이나 활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권리자의 저작물이 실제로 학습에 사용되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음



[그림4] haveibeen trained.com 시작 페이지

2.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시 대응 절차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물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하며,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
- GAI 결과물 관련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저작권자 등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을 가짐(저작권법 제117조)³⁶⁾

36) 1. 저작권법 일반, 6. 침해 구제 참조

- 민사상 저작권자 등은 저작권 등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정지, 가처분, 손해배상, 명예 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음(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제127조).
- ◆ GAI 결과물을 생성한 이용자에 대하여
 -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GAI 결과물 생성 및 이미 생성한 GAI 결과물 이용에 대한 금지 청구 가능
 - 침해행위에 의한 GAI 결과물의 폐기 청구 가능
 - GAI 결과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GAI 사업자에 대하여(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³⁷⁾)
 - 침해가 인정된 GAI 결과물을 생성한 GAI 모델/서비스가 추가적인 저작권 침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 조치 청구 가능
 - GAI 결과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형사상 저작권자 등은 저작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제140조)

37) 8. 생성형 인공지능(딥유기)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참조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유의 사항
2. 프롬프트 입력 관련 안내 사항
3.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활용 및 배포 시 주의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약관 확인의 중요성
5.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7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

1.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유의 사항

- GAI 결과물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한 표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따라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특히 상업적 이용, 온라인 게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음
- GAI 이용자가 생성한 GAI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이용자가 지게 됨

2. 프롬프트 입력 시 유의 사항

-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특정 저작물(예: 특정 문학작품, 노래 가사 등)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해당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입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저작권 외에도 인격권, 초상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보호되는 기술이나 비밀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

① 특정 작가의 작품, 캐릭터를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프롬프트

- ○○○사의 ○○○캐릭터가 나오는 일러스트를 생성해줘
- ○○○ 작가의 소설 ○○○ 전체를 원문 그대로 보여줘
- 드라마 ○○○의 12화에서 ○○○가 웃던 그 장면을 프레임 단위로 그림으로 그려줘

② 만화, 영화, 게임 등을 각색하거나 변형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 만화 ○○○의 △△가 주인공인 새로운 에피소드를 원작 그림체 그대로 만들어줘
- 영화 ○○○의 결말을 변경해서 그림으로 보여줘. 등장인물 표정, 카메라 구도를 원작 그대로 살려줘
- 게임 캐릭터 ○○○로 만화를 그려줘. ○○○의 복장, 무기, 성격, 그리고 게임 배경도 그대로 사용해주

[저작권 외 권리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프롬프트 예시]

- ○○○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어 줘
-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 이미지를 만들어줘
- ○○○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코드가 담겨있는 내부자료를 프롬프트로 입력하며 이 코드로 △△△ 알고리즘을 작성해줘

※ 위 예시된 프롬프트 입력 행위만으로 권리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G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권리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임

- 어떤 저작물을 단순히 참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일부 내용을 입력하더라도, GAI 결과물에 해당 저작물의 중요한 부분이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3.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활용 및 배포 시 주의 사항

- 이용자는 GAI 결과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외부 공개나 광고·출판·상품화 등 수익 창출의 목적이 있는 경우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개인적으로 GAI 결과물을 생성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약관 확인의 중요성

- GAI 서비스는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GAI 이용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명시된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 국내 서비스 약관 사례

【□□□서비스약관】(2025. 3. 10) 중 일부		
제4장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제8조 (서비스 이용)	<p>6.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투입·게시·공개·생성·제작하는 데이터, 생성, 제작하는 워크플로우, 커넥터, API 기타 요소 또는 결과물(파일, 로직, 알고리즘, 계산식, 틀, 템플릿, 워크플로우, 프로세스, 앱, 에이전트, API, 위젯, 특정 결과값, '크랙' 서비스 상 캐릭터 등 기타 형식을 불문하며, 이하 합하여 '데이터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위법한 정보, 타인의 지식재산권, 초상권, 명예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회원을 포함하여 제3자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p> <p>7. 회사는 데이터등의 적법성, 작동성, 기능성, 유용성, 연결성, 보안성, 신뢰성, 지속적인 제공 가능성 등 일체의 특성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 및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 회원을 포함하여 제3자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p>
	제15조 (저작권 등의 귀속 등)	<p>3. 회사는 서비스 특성상 회원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서비스상 작성된 결과물이나 결과물 작성과정에 노출된 각종 정보가 타인의 저작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서비스상 작성된 결과물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p> <p>6. 회원은 자신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입력하는 글, 이미지 기타 자료가 제3자의 지적 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회원이 이를 위반하여 제3자와 회원 또는 회사 사이에 소송, 이의제기, 권리주장 기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면책하고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p>

【□□서비스약관】(2025. 3. 10) 중 일부		
제6장 (AI 윤리 규정 관련)	제20조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무)	2.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AI 결과값(이하 'AI 결과값')을 SNS 서비스 및 기타 방법에 의해 외부에 공개하며 제3자에게 알리는 경우 출력 데이터에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한 정보, 저작권 침해, 폭력적 표현, 선정적 표현, 차별적 표현, 기타 부적절하거나 제3자에게 기타 권리침해, 불이익, 손해, 불쾌감을 주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AI 결과값과 관련하여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3자와 일체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장 기타	제26조 (면책 및 손해배상)	3. 회사는 AI 결과값의 적법성, 독창성, 배타성, 신뢰도, 정확성, 진실성, 활용 가능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결과물로부터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AI 결과값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 해외 서비스 약관 사례

【○○서비스약관】(2025. 3. 10) 중 일부		
1. API		계약에 따른 API 고객에 대한 ○○○의 손해배상 의무에는 고객의 산출물의 사용 또는 배포가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3자의 클레임이 포함됩니다. 본 손해배상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산출물이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ii)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가 제공하는 관련 인용, 필터링 또는 안전 기능이나 제한을 비활성화, 무시,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iii) 산출물이 수정, 변형되거나, 또는 ○○○가 제공하거나 ○○○를 대리하여 제공되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iv) 고객 또는 그 최종 사용자가 입력물 또는 미세 조정 파일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서 침해가 의심되는 산출물을 생성할 경우, (v)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거래 또는 상업에서 산출물을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클레임에서 상표 또는 관련 권리 위반을 주장할 경우, 및 (vi) 침해가 의심되는 산출물이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콘텐츠에서 발생한 경우.
3.○○○ 기업및팀		(b) 산출물 손해배상. 본 계약에 따른 ○○○ 고객에 대한 ○○○의 손해배상 의무에는 고객의 산출물의 사용 또는 배포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포함됩니다. 본 손해배상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산출물이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ii)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가 제공하는 관련 인용, 필터링 또는 안전 기능이나 제한을 비활성화, 무시,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iii) 산출물이 수정, 변형되거나, 또는 ○○○가 제공하거나 ○○○를 대리하여 제공되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iv) 고객 또는 그 최종 사용자가 입력물 또는 미세 조정 파일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서 침해가 의심되는 산출물을 생성할 경우, (v) 고객 또는 고객의 최종 사용자가 거래 또는 상업에서 산출물을 사용하는 것을 근거로 클레임에서 상표 또는 관련 권리 위반을 주장할 경우, 및 (vi) 침해가 의심되는 산출물이 제3자가 제공하는 상품의 콘텐츠에서 발생한 경우.

【○○○ 서비스약관】(2025. 3. 10) 중 일부

5. △△△

사용자들은 자신의 맞춤형 △△ 버전인 “△△△”에 대한 액세스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 용:

- (a) △△△ 콘텐츠. 귀하가 귀하의 △△△ 에 업로드하거나 포함시키는 정보 또는 콘텐츠(예: 귀하의 △△△ 이름, 지시 및 설명)(“△△△ 콘텐츠”)는 귀하의 콘텐츠입니다. 귀하와 ○○○ 중에서, 귀하의 △△△ 사용과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귀하의 △△△ 콘텐츠, 조치 및 구성과 귀하의 △△△ 콘텐츠, 조치 및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출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가 본 계약 및 당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b) △△△의 배포 및 홍보. 귀하의 △△△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귀하는 다음과 같이 비독점적, 전세계적, 취소 불가능하고 로열티 없는 라이선스를 부여합니다: (i) ○○○에게 귀하의 △△△(△△△ 콘텐츠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 시험, 저장, 복사, 번역, 게시, 수정, 배포, 홍보 및 다른 방식으로 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ii) 귀하의 △△△의 산출물이 귀하의 △△△ 콘텐츠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귀하의 △△△ 사용자에게 귀하의 △△△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사, 게시, 배포, 2차 저작물 생성 및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선스. 귀하는 귀하의 △△△에 관하여 귀하가 공표하는 모든 정보가 항상 완전하고 정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 (c) 조치. △△△와 상호 작용하는 API,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조치”)는 당사의 플러그인 및 조치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귀하는 귀하의 △△△에 포함된 조치가 해당 조건에 따라 운영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d) 제거. 당사는 법적 이유 또는 보안상의 이유 등의 이유로 또는 귀하의 △△△가 당사의 약관을 위반할 경우, 귀하에게 통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당사의 서비스에서 △△△를 거부 또는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에 대하여:

- (a) 제3자 △△△. ○○○가 △△△의 개발자로 적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다른 사용자가 생성하여 ○○○가 제어하지 않는 콘텐츠 또는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의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생성한 △△△ 명의로 “△△△”를 사용하는 것은 ○○○가 해당 △△△를 생성, 지원 또는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알고 신뢰하는 △△△만 사용하십시오.
- (b) 남용 신고. 귀하는 당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를 △△△내 당사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c) 조치. △△△는 귀하가 조치와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래의 플러그인 및 조치에 대한 당사의 조건을 따릅니다.
- (d) 변경 및 제거. ○○○ 및 △△△의 생성자들은 사전 통지 없이 어떠한 이유론든 언제든지 △△△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 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이용자가 GAI를 이용하여 특정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GAI 결과물을 만들었고, 민·형사상 저작권 등 권리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 그 침해가 인정된다면 저작권 등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구체적 책임 범위와 적용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 사항



1.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형
2.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유의 사항
3.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4.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약관 명시

1.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형

- 생성형 인공지능사업자(이하 “GAI 사업자”라 함)는 ①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와 ② 개발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자로 나뉠 수 있음

[참조 사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또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 등이면 인공지능사업자가 됨

2.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저작권 유의 사항

- GAI 결과물의 저작권 등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음
 - 모델 학습·평가 및 최적화는 1회 이상 반복되는 과정이기에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³⁸⁾을 활용하여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GAI 사업자의 경우 파운데이션 모델에 학습된 데이터를 전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범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자와 개발된 범용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서비스하는 자는 이용계약 체결 시에 책임 귀속에 관한 부분까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저작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이외에도 다양한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저작자의 명예훼손, 저작물의 왜곡 및 변형 행위, 특정인의 사진을 무단 활용한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GAI 사업자는 해당 권리들의 법적 보호 범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38)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기 지도 학습을 통해 학습한 모델로서 이용자가 목적에 맞게 미세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용 모델을 의미(예: GPT, BERT, CLIP 등)

3.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 GAI 사업자가 미세 조정 과정에서 특정 저작자의 저작물을 집중적으로 추가 학습시킨 GAI 모델을 만든 경우 등 저작물 이용행위의 목적, 태양, 기여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GAI 사업자도 저작권 등 침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개별 사안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한 GAI 모델/서비스의 학습데이터 양, 특정 프롬프트에 대한 알고리즘 설정, 특정 프롬프트 입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실질적 침해 주체를 판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저작권 등 침해의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결정될 수 있음
 - 즉, GAI 사업자도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결과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각 사업자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관련 예방 사례]

- 메타 프롬프트(Meta-Prompt) 및 필터링 활용
M사의 GAI 서비스의 경우 메타 프롬프트와 필터를 활용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요청에 대해 거부 응답을 제공
예를 들어, 이용자가 "뽀로로를 그려줘"라고 입력하면, 해당 요청이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와 같은 거부 메시지를 반환함

“죄송합니다. 해당 요청은 저작권 문제로 인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 프롬프트 재해석 및 키워드 삭제
D 모델 기반 GAI 서비스에서는 유명 캐릭터 · 현대 미술 등 특정 유형의 창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프롬프트를 재해석 · 키워드 삭제 등 추가 조치 적용
프롬프트에서 유명 캐릭터, 특정 작가의 작품 등 저작권 있는 저작물 관련 키워드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결과물이 관련 저작물과 유사하지 않도록 함

뽀로로를 그려줘

죄송하지만, 뽀로로는 저작권이 있는 캐릭터라서 직접 이미지를 생성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뽀로로와 비슷한 귀여운 펭귄 캐릭터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귀여운 스타일이나 특정 분위기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 🌈 ✨

[그림5] 필터링 및 프롬프트 재해석 예시

또는, “해당 요청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므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반환함

- 그 외에도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GAI가 학습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데이터 제거(deduplication), 데이터 재가중치(reweighting) 등도 적용할 수 있음

- GAI 사업자는 AI 학습을 위한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와 이용 허락 계약 등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분쟁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용 허락 계약 사례]

- 해외 O사는 언론 출판 분야에서 전세계 주요 미디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해외 P사는 국내 언론사들과 협약을 맺어 검색 답변에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우선적으로 노출해 저작권 분쟁을 피하고 언론사에 광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함
-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AI 기술 개발, 언어 연구 및 어문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말뭉치(corpus) 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여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별도로 저작권 계약을 체결
- 국내 P사는 자사의 직원들이 직접 작곡한 음악 또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미디어파일과 같은 형태로 입력하여 음악 생성 AI 학습에 활용
- 2023년 8월 국내 N사는 허락을 받은 특정 작가의 이미지만을 학습시켜 해당 작가의 작품 활동을 도울 수 있는 AI 창작 도구를 개발 중이라고 밝힘

[개발 사례³⁹⁾]

- 해외 P 개발사는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LLM 학습용 데이터셋(약 2조 토큰 포함) “Common Corpus”를 개발하였음
- 해당 데이터셋의 모든 데이터는 퍼블릭 도메인 또는 자유이용허락(예: CC BY, MIT 등)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음
- 기존 LLM은 웹에서 크롤링하여 저작권 이용 허락이 불명확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나, “Common Corpus”는 유럽 내 법적 규제(EU AI Act 등)를 준수하면서 LLM 학습이 가능한 사례로 제시되고 있음

Dataset	Documents	Words	Tokens
Open Government	74,727,536	257,233,670,261	406,581,454,455
Open Culture	93,156,602	549,608,763,966	885,982,490,090
Open Science	19,220,942	147,305,783,453	281,193,563,789
Open Code	202,765,051	77,669,169,092	283,227,402,898
Open Web	96,165,348	33,208,509,065	73,217,485,489
Open Semantic	30,072,707	23,284,201,782	67,958,671,827
Other	925,462	328,160,421	486,099,734
Total	517,033,648	1,088,638,258,040	1,998,647,168,282

Dataset composition of Common Corpus⁴⁰⁾

License type	Tokens
Public Domain	1,138,508,375,958
CC-By	287,749,264,457
MIT	142,694,227,607
CC-By-SA	74,768,060,836
Apache-2.0	68,750,977,037
BSD-3-Clause	18,483,944,333
Open license	10,432,513,767
BSD-2-Clause	5,497,145,480
CC-BY-4.0	2,110,966,243
CC0-1.0	1,877,206,195

Token counts for the ten most common licenses in Common Corpus⁴¹⁾

4.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관련 GAI 서비스 약관 명시

- GAI 사업자는 이용 약관을 통해 GAI 결과물과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GAI 결과물을 생성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저작권 등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사례]

- A사(2023년 6월), G사(2023년 10월), M사(2023년 9월), O사(2023년 11월) 등에서는 고객들의 각 사 AI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소송비용 등 법적 책임을 일정 조건 아래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밝힌 바 있음

〈 M사의 고객 저작권 약속(Customer Copyright Commitment, CCC) 〉

- M사는 상업용 서비스에 대해 기존 IP 보증을 확장한 '고객 저작권 약속(Customer Copyright Commitment)'을 2023년 10월 1일부터 제공
- 상업용 서비스의 결과물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 등 IP 침해 소송에서 회사가 고객을 방어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 고객이 서비스의 안전장치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고의적 침해가 없을 때에만 적용

39) Pierre-Carl Langlais et al, "Common Corpus: The Largest Collection of Ethical Data for LLM Pre-Training", arXiv:2506.01732 [cs.CL], 2025. 6. 2.

40) ibid., p.4 Table 1.

41) ibid., p.5 Table 3.





부록 1. Q&A

부록 2.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 운영 경과

Q1) 스타일(작법, 화풍 등) 모방도 저작권 등 침해가 되나요?

-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에 없던 독특한 화풍, 기법이라도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GAI 결과물이 단순히 어느 특정 작가의 작법, 화풍 등의 스타일과 비슷한 경우라면 저작권 등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화풍이나 기법이 아닌 창작적 표현을 베끼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그 판단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 이용자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레퍼런스로 직접 입력하거나 프롬프트 등을 통해 특정 작품과 유사한 결과물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원본 작품의 표현과 유사한 GAI 결과물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 등
- ※ 스타일 모방 등을 비즈니스 모델 또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이 유명 작가의 작품 등을 AI 학습에 무단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GAI 결과물도 저작물인가요?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2)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GAI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GAI 활용 저작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GAI 산출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GAI를 도구로 활용하여 만들어낸 GAI 결과물의 경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면 “GAI 활용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GAI 산출물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학습데이터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출력된 것이므로, GAI가 만든 산출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저작물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Q3)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하게 되나요?

- 현행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공정이용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됨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음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사안별로 적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저작물의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나 공공 기관이 아닌 법원에서 판단하는 사안입니다.

Q4) GAI 커버곡이나 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가 되나요?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실연은 저작물 등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상·음성 그 자체는 저작물 및 실연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성우나 가수 등 실존 인물의 초상·음성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 또는 실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⁴²⁾
- 하지만 무단으로 GAI 커버곡을 만들 경우, 커버곡 제작을 위하여 음반 등을 학습하여야 하며, 학습시에는 복제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5) 저작물을 사용할 때, 이용 허락을 어떻게 받으며 사용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기존 저작물을 활용하고 싶다면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때, 저작권자(신탁단체에서 관리하는 저작물의 경우 해당 신탁단체)와 이용자는 협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정하게 됩니다.

Q6)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우리나라에서 외국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등 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 법과 외국법 중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될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이 이용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속지주의에 따라 저작물이 이용되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미국 작가의 그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GAI 결과물이 유통·판매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반대로 미국에서 대한민국 작가의 그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GAI 결과물이 유통·판매되는 경우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인터넷상에서는 저작물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

42) 다만, 민법상 인격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침해행위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장소 또는 저작물이 도달하여 실제로 이용된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있는 사용자가 미국 서버에 있는 GAI를 통해 생성한 이미지를 대한민국 내 SNS에서 게시하고 공유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저작물이 이용되었다고 판단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수 국가에서 동시에 이용된 경우, 각국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어서 다국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Q7)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 G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등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판례의 태도 등을 참고하여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비교적 명확한 영역에 대한 안내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 쟁점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음
 - 본 안내서는 2025년 3월 발족한 제3기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에서의 논의와 개별 위원의 검토를 바탕으로 워킹그룹 전체회의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음
-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분과 참여 명단〉

구분		소속 및 직위
법조계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부장판사)
	조아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학계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상욱	3분과 분과장/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원	대구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술계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우사이먼성일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부교수
정부/공공기관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
	문지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서기관
	박형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주무관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박한빈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
	박정훈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한효정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남경태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주임
	정성희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 부장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발 행 2025년 6월 30일

기 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 법제연구팀

집 필 김찬동 팀장(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한호정 선임연구원(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발행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주 소 (52851) 경남 진주시 소호로 117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인쇄처 행복한나무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